

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2. 9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본 사업은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「3대 문화권 문화·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」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음.
- 이에, 모례정 일대를 신라불교 전래역사의 현장으로 전승·보전하고 불교문화의 전시·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,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28,066	—	28,066	100.0	
관리 지역	계획관리지역	11,114	증) 16,952	28,066	100.0	
농림지역		16,952	감) 16,952	—	—	

－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	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가	도개면 도개리 328번지 일원	농림 지역	계획 관리지역	16,952	16,952	100% 이하	신라불교문화 초 전지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3. 관련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⑤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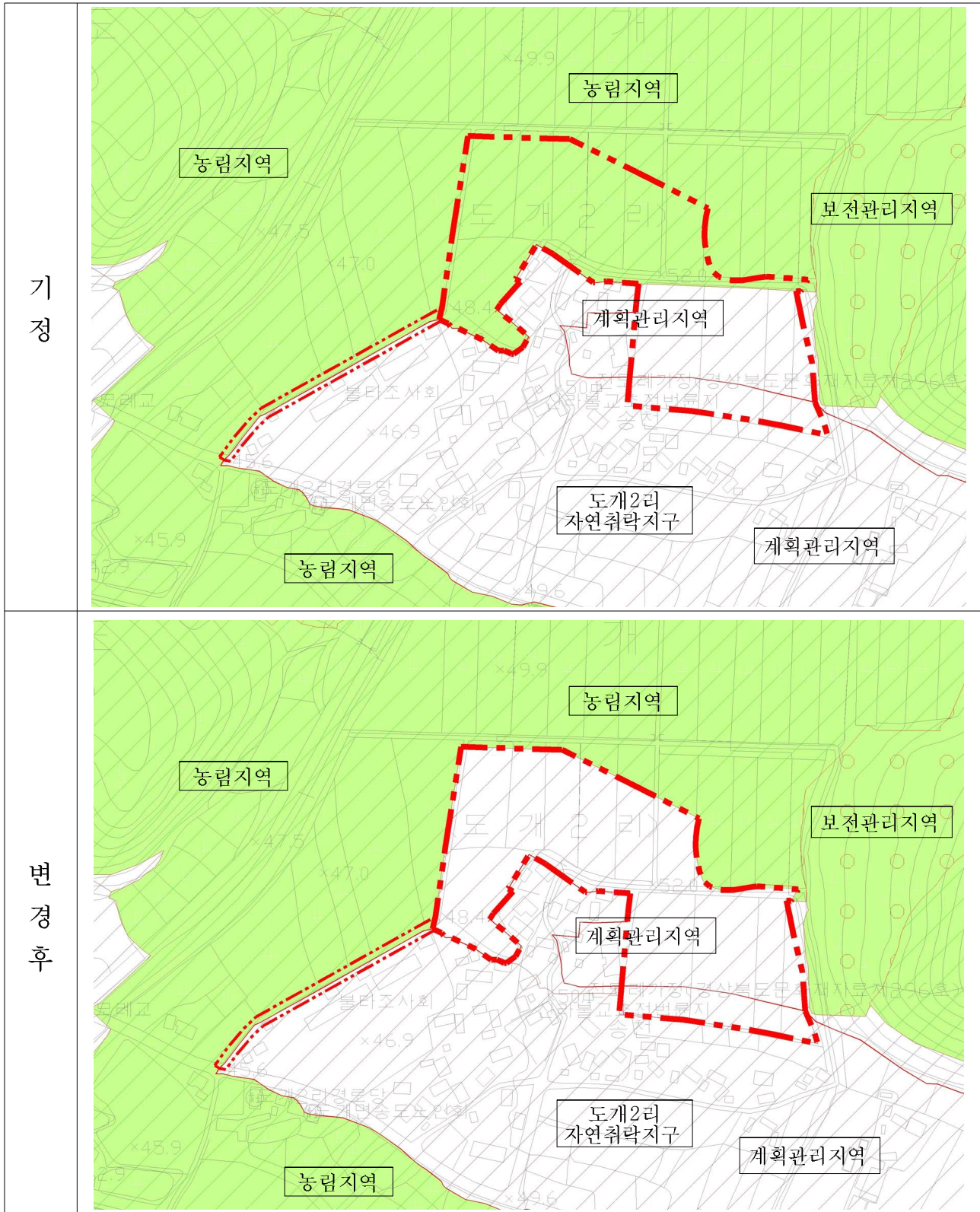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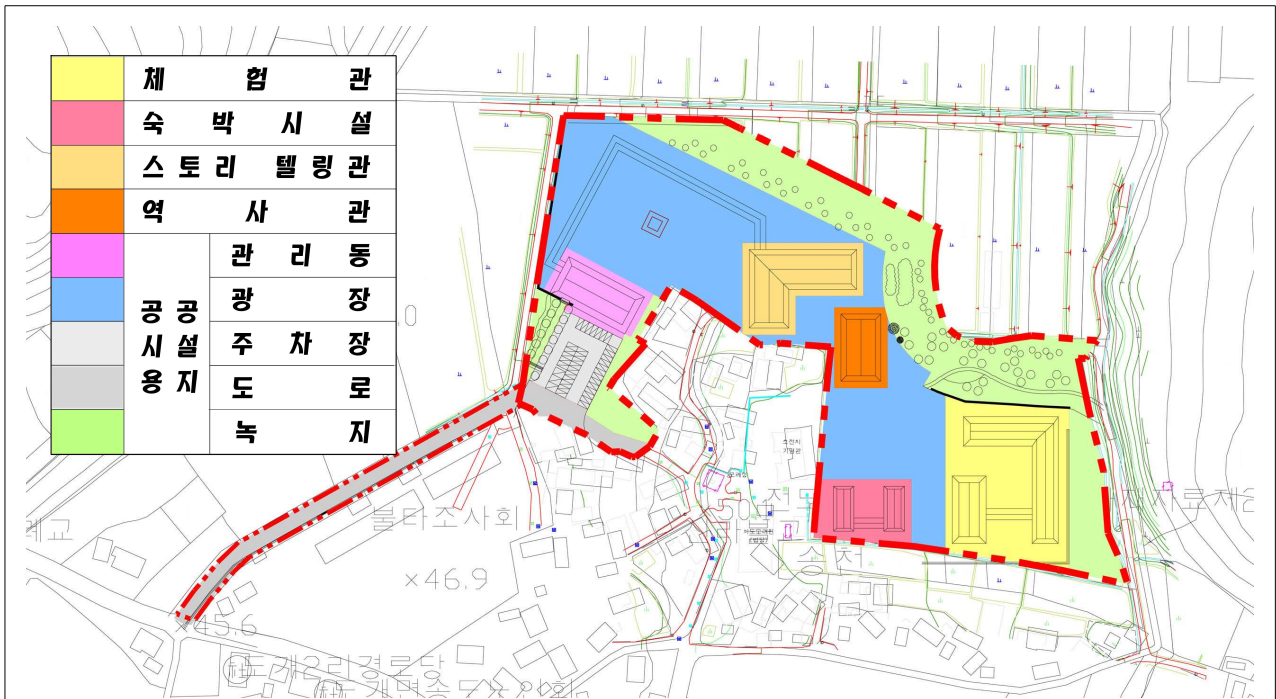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4. 붙임

1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“안” : 용도지역 변경



2)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

시설명	총계	체험관	숙박시설	스토리텔링관	역사관	공공시설				
						관리동	광장	주차장	도로	녹지
면적(m ²)	28,066	3,795	1,175	1,670	842	1,026	10,143	1,009	565	7,841
구성비(%)	100.0	13.5	4.2	6.0	3.0	3.7	36.1	3.6	2.0	27.9

